

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7 (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

나. 폐지사유

-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교육은 농촌 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현실성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 폐지안은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교육은 농촌 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현실성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97 - 49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일자 : 1997. 4. 10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